

建築士法改正建議書

■ 지난 數個月間 建築士法에 對한 研究를 거듭해 온 本協會에서는 그동안 建築士法 改正案 公聽會와 同 改正案에 關한 全國市道支部長會議 및 理事會 등을 거쳐 同法 改正建議案을 確定코 지난 '74年 11月30日 正式으로 建設部에 提出했는데 本協會에서 建議한 同法 改正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. ■

建築士法改正建議案의 概要

〔1〕 建築士의 等級制度

改正內容

- (1) 建築士의 等級制度를 廢止하여 單一化하였다.
- (2) 經過規定：改正法律施行當時의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에 대하여는 改定法律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取得할 때까지 舊規定의 規定을 적용하게 하였다.

改正理由

- (1) 建築士의 資質向上
- (2) 等級制度로 인한 문제점의 是正
- (3) 等級制度를 채택한 外國의 立法例는 없다. (다만 日本은 等級制度를 채택하고 있음.)

關聯事項

- (1) 免許業務限界(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)를 現行 1級 및 2級の 業務와 같이 하였다. → [3] 참조.

〔2〕 建築士資格試驗의 應試資格

改正內容

- (1) 應試資格을 現行 1級建築士資格試驗應試資格에 각각 2年씩 延長 追加하였다.

〈1〉 應試資格에 필요한 實務經歷年數

| 區 分 \ 學 歷 | 大 卒 | 初大卒 | 高 卒 | 2級建築士 | 其 他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現行법에 의한 1級建築士 試驗 | 5 年 | 7 年 | 10 年 | 3 年 | 17 年 |
| 改正案에 의한 建築士 試驗 | 7 年 | 9 年 | 12 年 | 5 年 | 19 年 |

〈2〉 經過規定案의 說明

| 案 의 內 容 | 說 明 |
|--|---|
| 1級建築士……소정의 實務 經歷年數(例：大卒者는 7年)에 達한 때, 經歷銓衡에 의하여 免許取得 | 舊規定의 1級建築士試驗을 改定법에 의한 建築士(上向 調整된 資格)試驗과 同一하게 인정할 수 있다. |
| 2級建築士……소정의 實務 經歷年數(例：大卒者는 7年)에 達한 때, 一部科目試驗과 經歷 銓衡에 의하여 免許取得 | 舊規定의 2級建築士試驗을 改定법에 의한 建築士(上向 調整된 資格)試驗과 同一하게 인정할 수 있다. |
| 免許未取得者……改定法施行당시 舊規定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應試資格이 있는 者(例：大卒者는 5年)에 대하여는 改定法施行日로부터 2年間に 한하여 改定법에 의한 建築士試驗에 應試하여 免許를 取得할 수 있다. | 應試資格이 있으나 免許를 取得하지 못한 者에게 그 應試機會를 주기위한 경과 規定이다. 2級建築士로서 3年 이상의 實務 經歷年數를 가진 者에 대하여도 적용 됨. |

1級建築士인者……所定 經歷年數에 達한 때 經歷銓衡

2級建築士인者……所定 經歷年數에 達한 때 一部科目試驗과 經歷銓衡

免許未取得者……舊規定 1級建築士 應試有資格者는 2年間に 한하여 建築士應試資格을 준다.

改正理由

- (1) 建築士の資質向上
 - (2) 国家技術資格法の 규정에 의한 技術士の 資格과의 均衡 확보
- 關 聯 事 項
- (1) 免許業務限界의 調整→(3) 참조

經過規定 參考圖

| 区分 | 実務, 研究經歷 (施行初年度 현재) (大卒者基準) | 施行年次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初年度 (75) | 2 (76) | 3 (77) | 4 (78) | 5 (79) | 6 (80) | 7 (81) | 8 (82) | 9 (83) | 10 (84) |
| 1級建築士 (經歷銓衡) | 7年以上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| | | |
| | 6年以上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| | | |
| | 5年以上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| | | |
| | 4年以上 | (1級建築士 応試資格은 5年以上으로 해당없음) | | | | | | | | | |
| 2級建築士 (經歷銓衡 및 一部科目試驗) | 7年以上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6年以上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5年以上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4年以上 |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3年以上 | |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2年以上 | | |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1年以上 | (2級建築士 応試資格은 2年以上이므로 해당없음) | | | | | | | | | |
| 기 타 (改正法에 의한 正規試驗) | 7年以上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6年以上 | 斜線 | 斜線 | | 당연히 正規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| | | | | | |
| | 5年以上 | 斜線 | 斜線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4年以上 |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| | 3年以上 | | | |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 斜線 |

75年을 施行初年度로 하였을 때의 年度

經過規定에 의하여 応試資格이 완화되는 범위 되

[3] 建築士의 免許業務限界 (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)

改正 內容

| 구 분 | 案 의 內 容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. | 建築士法 5 조(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및 工事監理) 그대로 한다. |
| 누구나 할 수 있는 것. | 現行規定의 “누구나 할 수 있는 것”과 같이 한다. |

案에 대한 說明

現 1級建築士 또는 2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및 工事監理를 그대로 建築士가 承繼하는 案으로서 이렇게 되면 각각 名稱만 바꾸어 놓은 結果가 된다.

별로 검토할 만한 案이 못된다고 생각한다. 된

改正 理由

建築士의 等級制度를 廢止하고 그 資格이 上向調整되므로 당연히 改定案의 建築士의 免許業務限界도 調整되어야 한다.

免許業務限界의 比較도

| 延面積 (m ²) | 建築物의 層數 | 構造 | 案 의 內 容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鐵筋콘크리트造, 鐵骨造·石造·벽돌造 콘크리트블록造·無筋콘크리트造 | | | 기타의 構造 (木造) | | | |
| | | | 1층 | 2층 | 3층 이상 | 1층 | 2층 | 3층 이상 | |
| 30 이하 | 30 이하 | 一般 | | | ■ | | | | 높이 13m 처마높이 9m 를 넘는것 |
| | | 特殊 | | | ■ | | | | |
| 30 넘고 | 1000 이하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| 100 넘고 | 2000 이하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| 200 넘고 | 3000 이하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| 300 넘고 | 5000 이하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| 500 넘고 | 1,0000 이하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| 1,000 넘는것 | 1,000 넘는것 | 一般 | ■ | | | | | | 都市計劃區域外 |
| | | 特殊 | ■ | | | | | | |

- 누구나 할 수 있는 것
- 現行 1급 및 2급 建築士만이 할 수 있는 것
- 現行 1급 建築士만이 할 수 있는 것
- 改正 建築士만이 할 수 있는 것(案)

[4] 士協任員의 增員

改正改容：士協任員中 理事定員(現行5人)을 增員하여 9人으로 한다.

改正理由：士協發展에 따른 機構 및 運營의 強化

[5] 建築士의 雇傭된 業務行為의 制限

改正內容

建築士는 他人(自然人 및 法人)에 고용되어 建築士의 業務行為를 하지 못한다.

다만 國家 또는 大統領으로 정하는 公共團體의 公務員 또는 任職員인 建築士인 者가 그 所屬機關의 業體로서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.

改正理由

- (1) 建築士의 業務行為가 庸傭關係가 있으면 建築士가 所信것 그의 社會的 職能을 발휘할 수 없으며, 建築士 制度의 健全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.
- (2) 따라서 建築士의 業務行為는 원칙적으로 委託에 의하여야 한다.
- (3) 國家·公共團體의 경우를 例外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特殊한 事情을 고려한 것이나, 장차 이 但書는 적 당한 시기에 削除되어야 한다.

[6] 兼業行為의 制限

改定內容

建設業·建築資材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과 兼業하는 建築士의 業務行為는 할 수 없다.

改正理由

建設業·建築資材業 등과 兼業하는 設計 및 工事監理의 業務行為는 그 公正性을 해할 우려가 있다.

[7] 業務規定의 委託

改正內容

建築士의 業務行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改正理由

현행 建築士法의 未備한 業務關係規定을 補完할 필요가 있다.

[8] 制裁處분에 있어서의 聽問

改正內容

建築士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制裁處分을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가 그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당해 建築士에 대하여 聽問하여야 한다.

改正理由

不當한 制裁處分을 방지하려는 것임.

[9] 補修教育

改正內容

建設部長官은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教育을 命할 수 있다.

改正理由

建築文化發展에 따른 資質向上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.